

간편결제 금액 80조 '육박'

온라인 결제비중 높아

간편결제 시장 성장세가 무섭다. 간단한 인증 하나로 쉽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찾는 금융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 금액은 80조 1453억원으로 지난 2016년(26조 8808억원) 대비 3배 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용건수는 23억8000건으로 2년 전(8억5000건)보다 2.8배 늘었다.

온라인 결제금액은 60조6029억원으로 오프라인(19조5424억원)보다 약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거래 특징을 살펴보면,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금액이 30조9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겸업PG사가 제공하는 자사 유통망을 기반으로 둔 간편결제 거래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겸업PG사 중 상위 3곳인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11번가 등의 간편결제 금액은 16조2000억원으로 2016년(3조7000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채진술 기자 jinsok@meconomynews.com

“삼성생명, 즉시연금금액 계산법 밝혀라”

즉시연금 미지급 1조 추정... 소비자들 소송 법원 “약관에 연금액 계산식 없어 1차 잘못” 삼성생명 “복잡한 계산식까지 다 적어야 하나”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공판

미지급 추정금액이 1조 원대에 달하는 즉시연금 관련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 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분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동욱 부장판사는 “보험약관에 명확한 계산식이 없고, 말로만 표현돼 있어서 원고와 피고 간에 약관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다”며 “약관에 월 지급 연금액의 계산식을 넣지 않아 피고에게 1차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판사는 “피고(삼성생명)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입자들은 잘 모를 것 같다”고도 했다.

삼성생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임시규 변호사는 “연금액 계산 수식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복잡하다”며 “계산식을 약관에 다 넣기에 어려움이 있어 산출 방법서에 별도로 넣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로펌의 이효제 변호사는 “산출 방법서라는 (연금액 지급) 기준이 되는 서류를 만들고 그걸 약관에 반영했다”며 “보험 계약자를 위해 모든 수식을 약관에 다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금소연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주 변호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험료 얼마를 내면 얼마를 돌려받느냐인데,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연금액 공제 근거도 나와 있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연금액 계산법을) 알 방법이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제기된 소송이 많은데, 즉시연금 관련해 AIA·DB·신한생명은 지급 의사를 밝혔다”며 “AIA생명의 경우 다음주 첫 재판이 열리는 데,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료 지급 의사가 있으니 조정해 달라고 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삼성생명) 측이 보험료 지급을 매달 어떻게 한 것인지 보험사는 알고 있을 테니, 계산 근거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금소연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형주 변호사는 “(삼성생명 측에) 계산 방법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니까 보험금 지급 방식을 제시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판사는 “(보험료 지급 계산 방법을) 우리도 알아야 아니까요”라고 답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후 대외협력팀장은 “재판 전체적으로 풍기는 뉘앙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리 다룰 것이 아니라, 사실을 파악해 입증해서 서로 입장에서 확인하면 고객에게 잘못된 부분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관 관련 법률상 약관 해석할 때 명백하게 해석이 안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돼 있다”며 “(다른 보험사들과 즉시연금 문제) 앞으로 9번의 재판이 더 남아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심리는 오는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금소연 측은 금융감독원에 의견 조회를 요청해 금감원 견해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 삼성생명 측도 즉시연금 계산식을 재판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만기 때 만기보험금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이 아닌 미지급 논란의 대상이다. 즉시연금 사태는 금리 하락 탓에 일부



미지급 추정금액이 1조 원대에 달하는 즉시연금 관련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시장경제DB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돼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핵심 쟁점은 약관의 범위다. 피고인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매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 문서를 공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소연은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공동소송을 냈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삼성생명을 포함한 21개 생명 보험사에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공제한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이 추정한 즉시연금 추가 지급액은 모두 7750억원으로 이중 삼성생명의 부담분이 54.2%(4200억원)를 차지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370억원만 환급기로 하고 나머지는 법원 판결을 받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0.1%
of a hacker is not dangerous.

Protex Kills 99.9% of germs.

Outdoor Bronze Lion Campaign
Title: HACKER 해커
Client: COLGATE
Product: PROTEX SOAP 비누
Agency: RED FUSE, Paris

해커 중 0.1%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프로텍스는 세균 99.9%를 박멸합니다

은행업무도 예약 시대

제출 서류 최소화 등 당국, 서비스 강화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18일 소비자 친화적, 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 왔으나 국민인식 조사결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관행적 업무를 개선하는 등 대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일단 은행의 경우 고객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 방문 예약제, 모바일 번호표 제도 등을 확대 도입한다.

현재 4052개 점포가 관련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업계는 연내 300곳을 늘려 4350개 점포에서 지점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도입이 어려운 은행은 지점 내방 고객 상황 실시간 안내 서비스, 지능형



사진=시장경제DB

순번기 등 대안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탄력점포도 확대된다. 근무 중 지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오피스, 상가 등을 중심으로 은행 탄력점포를 확대한다. 탄력점포는 현재 773개에서 986개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보험 보장 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현재는 통상 상품 계약단계에서만 안내하고 있지만 매년 고객들에게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분쟁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계좌 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에 대해 합리하게 거절하는 관행도 없어진다.

가입 상품과 무관한 특약까지 포함된 약관 서류도 줄어든다. 예로 한 건강보험 상품 약관 550페이지 중 특약 관련 사항만 300페이지에 달하나 특약 가입이 없는 고객에게도 550페이지 전부를 제공해 소비자 혼란만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차진형 기자 jinhyung@meconomynews.com

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 원가 항목구성 방식 알 수 있도록 개선 허위 공시할 경우 금융당국 정정 명령 명문화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등의 공시사항에 대해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하게 공시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정정하거나 재공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23조2)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부분과 경영지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연체율 및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지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현재 감독규정으로 금감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근거를 법상으로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TF’도 올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가 주요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고수익성을 추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웰컴을 비롯해 SBI와 오케이 등 대형 저축은행의 대손감안 순이자마진은 각각 9.3%, 5.7%, 4.5%로 시중은행 평균(1.5%)의 3배를 넘었다. 또 신용등급 5등급 고객부터 20% 이상 고금리를 일괄 부과해 6-10등급 사이에 큰 차이 없이 모두 20-25%대 고금리를 부과했다.

특히 오케이 SBI 웰컴 유진 애큐은 JT 친에 한국투자 등 대부 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는 가계신용 대출액의 73.6%가 고금리 대출이었다.

상위 7개사 가운데 오케이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9%로 가장 높았고 유진(88.3%) 웰컴(84.5%)도 80%를 넘었다.

감독당국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의 항목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산출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제도 정비를 위해 일선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 대출금리 반영 여부와 금리 원가 항목구성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라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